

●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-66호

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협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「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」 제10조제3항제3호, 「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, 「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(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-65호, '14.12.4)」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12월 4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공고

1. 후보 추천 대상 지역방송 관련 단체 (자격기준)

- (사업자단체 부문) 2 이상의 지역방송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·운영
- (학술단체 부문)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방송 또는 언론관련 연구와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방송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단체
- (비영리민간단체 부문)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방송 또는 언론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방송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·운영

2. 추천 인원 : 각 단체별 2인 이내 후보 추천

3. 추천 후보 결격 사유 (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)

- 「방송법」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
- 「정당법」에 따른 당원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

4. 추천 기한 : 2014. 12.12(금) 18:00까지

5. 추천 서류 등

- (추천서류) 추천 단체 및 후보를 확인·검증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
 - 추천 공문 1부
 - 추천단체 정관 및 정기회의 개최 실적 각 1부
 - 추천단체 지역방송 관련 활동실적(학술단체의 경우 지역방송 관련 연구실적 포함) 1부
 - 추천단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1부
 - 추천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
 - 추천 후보자 이력서(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) 1부
 - 후보자 추천 동의서 1부
 - 결격사유 확인서 1부
- (제 출 처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(우 427-719)
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역방송팀(02-2110-1451~2)
- (제출방법) 우편 또는 방문 제출

6. 위원 임기 : '14.12월~'17.12월(3년 간)

7. 위촉 예정일 : '14. 12. 19(금)

8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(www.kcc.go.kr)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